

자격기본법 시행령

<목 차>

1.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전형은
	담당부서 (과)	평생학습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최은옥		연락처	044-203-6381
	과장	권성연		이 메 일	mulnet1052@mail. go.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2.규제조문	제31조의5제1호(일부개정), 제31조의5제3호(신설)		
	3.위임법령	해당없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7.11~8.20.(40일간) (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3년 사전등록제 이후,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어 개선방안 필요 ※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의 일환		
	7.규제내용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안 제31조의5 제1호 일부개정) 자격 관련 광고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격’, ‘공인자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5 제3호 신설)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민간자격관리자		
	9.규제목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는 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민간자격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12. 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 ----- -----.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1. ----- ----- 사항(총비용은 자격응시 비용, 교육훈련비, 실습비, 교재비, 특별수업비, 자격증발급비, 각종 수수료 등 명칭·항목·납부시기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기본법」 제2조 5의2호 ‘등록자격’, 제2조 5의3호 ‘공인자격’ 해당 여부(각 조문의 내용을 함께 표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97년 자격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자격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면서 민간자격 지속 증가

* 민간자격개수(누적) : ('12)3,378→ ('13)10,949→ ('17)27,961→ ('18.3.)29,211개

- 양적 증가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부실 민간자격 등 소비자 피해 지속되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성 제기*

* 10만원에 '똑딱'... 판치는 3분 '자격증'('18.1.14 경향신문), 민간자격증 '홍수' 돈 내면 5시간 만에 '똑딱'('18.1.27 JTBC)

< 소비자원 신고 현황 ('15~'17, 4,203건) >

신고 유형	건수(%)	주요 사유
환불	2,687(63.9)	환불거부, 짧은 환불 기한 등
계약불이행	373(8.9)	계약과 다른 강의, 검정 방법 등
약관	68(1.6)	약관에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등
가격	62(1.5)	당초 표시된 총 비용 외 추가 비용 요구 등
표시광고	38(0.9)	등록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광고 등
기타	975(20.9)	계약 및 송금 후 폐업, 검정 없이 자격 발급 등

- 국무조정실은 '17.11월 민간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심층분석 과제로 선정하고 우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점 개선 추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
(안 제31조의5 제1호 일부개정)

* “총비용은 자격응시 비용, 교육훈련비, 실습비, 교재비, 특별수업비, 자격증 발급비, 각종 수수료 등 명칭·항목」납부시기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로 개정

- **현장의 문제점:** 자격 취득 총비용이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 혼란 및 피해 유발

— 【참고】 현장 사례 —

-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문제집 구입비 20만원 및 시험 응시료 6만원 지급 후 합격하였는데 처음에 얘기 하지 않던 추가 교육비 16만원을 요구" ('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광고 시 제시한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 외에 검정시험 준비를 위한 ‘**특별수업**’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 **대안선택 이유:** 기 시행령 조항의 ‘총비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규제의 방법이 간단하고 자격관리자의 부담이 적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 됨

- **자격 관련 광고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격**’, ‘**공인자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 (안 제31조의5 제3호 신설)

- **현장의 문제점:**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오인

— 【참고】 현장 사례 —

-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오인 61.3%,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 21.9%, 잘 모름 16.8% ('15.6., 한국소비자원, 민간자격 보유자 300명 대상 조사)
- "학원에 440만원을 지불하고 관련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 ('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다수의 소비자는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여 **등록의 의미**를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 **대안선택 이유:** 자격 관련 광고 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명시하는 것으로 규제의 방법이 간단하고 자격관리자의 부담이 적으며 소비자가 민간자격의 법정 구분을 인식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 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가공인자격협회	'18.01.17. 민간자격 개선방안 협의 및 의견수렴	주요사항 반영

한국민간자격협회	'18.01.17. 민간자격 개선방안 협의 및 의견수렴	주요사항 반영
한국YWCA연합회	'18.01.31. 민간자격 개선방안 협의 및 의견수렴	주요사항 반영
소비자시민모임	'18.01.31. 민간자격 개선방안 협의 및 의견수렴	주요사항 반영
한국소비자교육원	'18.01.31. 민간자격 개선방안 협의 및 의견수렴	주요사항 반영

3. 규제목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18.4.18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소비자는 자격취득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총비용을 명확히 인식하여 합리적인 비용과 계획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 국가가 공인한 우수한 민간자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자격 취득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목적) 민간자격 취득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
- (수단) 자격관리자가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는 ‘총비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총비용은 자격응시 비용, 교육훈련비, 실습비, 교재비, 특별수업비, 자격증 발급비, 각종 수수료 등 명칭·항목」납부시기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로 개정

- (비례적 타당성)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국민 전체의 편익은 증진되고 자격관리자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규제의 타당성이 있음

□ 자격 관련 광고에 ‘등록자격’, ‘공인자격’을 표시

- (목적) 소비자의 민간자격 취득 결정에 중요 정보를 제공
- (수단) 자격관리자가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등록자격’, ‘공인자격’을 표시하게 함.
- (비례적 타당성)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국민 전체의 편익은 증진되고 자격관리자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규제의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제1호에 따라 현재도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자격 관련 광고에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중에서 총비용에 대한 부연을 통해 자격관리자의 정보제공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특별히 가중하지 않으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격관련 광고 시, 해당 자격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5의2호 '등록 자격, 제2조5의3호 '공인자격'에 해당하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특별히 가중하지 않으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정안은 집행을 위한 행정수요를 발생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개정안은 집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7.10월 국무조정실 정책심층분석 과제 선정
- '17.11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제도개선안 협의
- '18.01월 공인·등록 민간자격협회,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18.02월 교육부-국무조정실 과장급 실무 협의
- '18.03월 전 부처 민간자격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 '18.04월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2. 향후 평가계획

한국소비자원 민원처리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 모니터링, 소관 부처 지도.점검 등을 통해 민간자격관리자의 규제 준수를 평가.점검할 계획임.

3. 종합결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규제부담은 작아 규제의 타당성과 준수성이 높고, 규제집행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수요도 없어 준수가능성이 높음.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